

[별표 1의3] <개정 2014.8.8>

**과징금의 부과기준**(제10조의4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,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(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)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.

2. 과징금 산정 방법

| 등 급 | 연간 총매출액(단위: 원)        | 1일 과징금액<br>(단위: 천원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  | 5억 이하                 | 13                  |
| 2   | 5억 초과 ~ 10억 이하        | 32                  |
| 3   | 10억 초과 ~ 25억 이하       | 64                  |
| 4   | 25억 초과 ~ 50억 이하       | 160                 |
| 5   | 50억 초과 ~ 75억 이하       | 320                 |
| 6   | 75억 초과 ~ 100억 이하      | 480                 |
| 7   | 100억 초과 ~ 200억 이하     | 640                 |
| 8   | 200억 초과 ~ 400억 이하     | 1,280               |
| 9   | 400억 초과 ~ 600억 이하     | 2,560               |
| 10  | 600억 초과 ~ 800억 이하     | 3,840               |
| 11  | 800억 초과 ~ 1,000억 이하   | 5,120               |
| 12  | 1,000억 초과 ~ 1,500억 이하 | 6,400               |
| 13  | 1,500억 초과 ~ 2,000억 이하 | 9,600               |
| 14  | 2,000억 초과 ~ 2,500억 이하 | 12,800              |
| 15  | 2,500억 초과 ~ 3,000억 이하 | 16,000              |
| 16  | 3,000억 초과             | 19,200              |